

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1. 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14조제1호나목 “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또는 평점“B”학점 이상인 자”로 수정

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제1호나목 중 “70점”을 “80점”으로, “C학점”을 “B학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)	제14조(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)
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	-----
한 구미시 새마을 남·여지도자	-----
(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	-----
이하 “새마을지도자” 라 한다)의	-----
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-----
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	-----
다만,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	-----
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.	-----
	-----.

	-----.
1.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	1. -----
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	-----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-----
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	나. -----
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 “C”학점	----- 80점 -----
이상인 자	----- “B”학점 -----
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